

택배와 함께 배송되는 희망의 번호 '1308' 위기임산부와 아동 지원 위한 민관협력 이어간다

-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주)한진 3자 업무협약 통해

위기임산부 지원 기부사업 지속 -

- 한진 물류 인프라 활용해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 협력 이어가 -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주)한진은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민관협력을 이어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과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추진하여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주)한진과 지난해 체결한 3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주)한진의 기부금을 통해 위기임산부 25명과 아동 12명에게 의료비·아동용품 구입비 등 사례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한진 홈페이지 및 한진택배 애플리케이션(APP) 내 배너광고 삽입 등으로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홍보하였다.

* 임신·출산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민관이 협력해 생계, 주거, 의료, 양육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올해도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 사업은 민관이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생계, 주거, 의료, 양육 등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한진은 홍보 활동 지원도 지속한다. '1308' 상담전화 번호가 표기된 택배 포장 테이프를 제작·배포하여, 일상 속 택배 물류망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상담과 지원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협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알리고, 더욱 두텁게 하는 의미 있는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한진 관계자는 “한진이 보유한 전국 물류 기반 시설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을 돕는 따뜻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보건복지부, (주)한진과의 3자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반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협력을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개요

2. ㈜한진 홍보 활동 지원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정소희 (044-202-3424)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중앙상담지원기관 위기임신 아동지원팀	책임자	팀 장	정정희 (02-6454-8713)
		담당자	주 임	황혜민 (02-6454-8718)



붙임 1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개요

1 개요

-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 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 보호

*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태어난 아동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2 주요 사업내용

- ①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17개소) 설치, 통합 상담전화(1308) 개통, 전담 상담인력 배치 등
- ②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 ③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 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 ④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



< '1308' 상담전화 번호가 표기된 택배 포장 테이프 >

